

女性근로자 流産때 유급휴가

노동부 지침마련 早·死産포함 최고 60일까지

노동부는 9일 워싱턴 여성근로자들이 만기출산 뿐 아니라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산 등 산전후 유급보훈휴가」의 부령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여성근로자가 임신8개월(1개월을 28일로 계산한 29주) 이후에 조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만기출산과 똑같이 60일의 법정유급보훈휴가를 주로 하고 임신4개월(13주)에서 7개월(28주) 사이에 유산 또는 조산했을 때는 법정유급휴가 60일과 산전후가 최대일수(29일)와 해산일을 제외한 산후30일의 휴가를 주도록 돼있다.

그러나 임신4개월미만(1~12주)의 유산은 태아이상발육등 휴가를 주어야 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갖출 경우에 한

해 최고30일까지 산후휴가를 주도록 했다.

그동안 만기출산 이외의 경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유산 조산 사산 시에 회사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거나 주지않았다.